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-4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: 2026. 4. .

제 출 자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통합돌봄 사업 추진 등 국가정책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준 인건비 반영인력을 증원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변경(안 제2조)

- 정원의 총수: 1,457명 → 1,479명(증 22명)
- 집행기관의 정원: 1,419명 → 1,441명(증 22명)

나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변경(안 별표 3)

- 총 계: 1,457명 → 1,479명(증 22명)
- 일반직 계: 1,446명 → 1,468명(증 22명)
- 5급(보건소) : 10명 → 11명(증 1명)
- 6급 이하 계: 1,368명 → 1,389명(증 21명)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### 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6. 3. 19. ~ 3. 25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평가 제외 대상
- 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,457명”을 “1,479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419명”을 “1,441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3]

**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**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<b>총 계</b>	<b>1,479</b>	<b>1,479</b>			
<b>정무직</b>	<b>1</b>	<b>1</b>			
<b>일반직 계</b>	<b>1,468</b>	<b>1,468</b>			
3급	1	1			
4급	10	8	1	1	
5급	<b>67</b>	39	1	<b>11</b>	16
6급 이하 계	<b>1,389</b>	<b>1,389</b>			
<b>전문경력관 계</b>	<b>1</b>	<b>1</b>			
<b>별정직 계</b>	<b>9</b>	<b>9</b>			
5급 상당	2	1	1		
6급 상당 이하 계	7	7			
<b>연구직 계</b>	<b>1</b>	<b>1</b>			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 라 한다)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<u>1,457명</u>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: <u>1,419명</u></p> <p>2. (생   략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1,479명</u>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1,441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>총계</th> <th>본청</th> <th>구의회 사무국</th> <th>보건소</th> <th>동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  계</td> <td>1,457</td> <td colspan="4">1,457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4">1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1,446</td> <td colspan="4">1,446</td> </tr> <tr> <td>  3급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  4급</td> <td>10</td> <td>8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  5급</td> <td>66</td> <td>39</td> <td>1</td> <td>10</td> <td>16</td> </tr> <tr> <td>6급 이하 계</td> <td>1,368</td> <td colspan="4">1,368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 계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4">1</td> </tr> <tr> <td>별정직 계</td> <td>9</td> <td colspan="4">9</td> </tr> <tr> <td>  5급 상당</td> <td>2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  6급 상당 이하   계</td> <td>7</td> <td colspan="4">7</td> </tr> <tr> <td>연구직 계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4">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	총   계	1,457	1,457				정무직	1	1				일반직 계	1,446	1,446				3급	1	1				4급	10	8	1	1		5급	66	39	1	10	16	6급 이하 계	1,368	1,368				전문경력관 계	1	1				별정직 계	9	9				5급 상당	2	1	1			6급 상당 이하 계	7	7				연구직 계	1	1				<p>[별표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left;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>총계</th> <th>본청</th> <th>구의회 사무국</th> <th>보건소</th> <th>동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  계</td> <td><u>1,479</u></td> <td colspan="4"><u>1,479</u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4">1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<u>1,468</u></td> <td colspan="4"><u>1,468</u></td> </tr> <tr> <td>  3급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  4급</td> <td>10</td> <td>8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  5급</td> <td><u>67</u></td> <td>39</td> <td>1</td> <td><u>11</u></td> <td>16</td> </tr> <tr> <td>6급 이하 계</td> <td><u>1,389</u></td> <td colspan="4"><u>1,389</u>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 계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4">1</td> </tr> <tr> <td>별정직 계</td> <td>9</td> <td colspan="4">9</td> </tr> <tr> <td>  5급 상당</td> <td>2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  6급 상당 이하   계</td> <td>7</td> <td colspan="4">7</td> </tr> <tr> <td>연구직 계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4">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	총   계	<u>1,479</u>	<u>1,479</u>				정무직	1	1				일반직 계	<u>1,468</u>	<u>1,468</u>				3급	1	1				4급	10	8	1	1		5급	<u>67</u>	39	1	<u>11</u>	16	6급 이하 계	<u>1,389</u>	<u>1,389</u>				전문경력관 계	1	1				별정직 계	9	9				5급 상당	2	1	1			6급 상당 이하 계	7	7				연구직 계	1	1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  계	1,457	1,45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1,446	1,44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10	8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66	39	1	10	1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이하 계	1,368	1,36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계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9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상당	2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상당 이하 계	7	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 계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  계	<u>1,479</u>	<u>1,479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<u>1,468</u>	<u>1,468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10	8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<u>67</u>	39	1	<u>11</u>	1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이하 계	<u>1,389</u>	<u>1,389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 계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9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상당	2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상당 이하 계	7	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직 계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비용추계 요약

가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(1) 발생요인: 정원증원(22명)에 따른 인건비

(2) 관련조문: 안 제2조(정원의 총수)

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행정안전부의 2026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내에서 예산운용

나. 인건비 단가는 2026년 직급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

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가. 총 계(누계) : 5,756,042천원

나. 연도별 비용 추계

(단위: 천원)

연도 구분	1차년도 (2026년)	2차년도 (2027년)	3차년도 (2028년)	4차년도 (2029년)	5차년도 (2030년)	합계
세 출 (인건비)	216,385	1,332,058	1,366,691	1,402,225	1,438,683	5,756,042
인상률 (전년대비)	-	2.6%	2.6%	2.6%	2.6%	-

※ 1) 산정기준

- 26년 인건비 예산편성 직급별 평균 호봉 기준 산정(기본급, 각종수당, 상여금 등 포함)

- 최근 3년 평균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반영

2) '26년 인건비는 실제 충원 가능 시기부터 산정(2개월분)

4. 재원조달 방안 : 전액 구비

5. 추가의견 : 비용추계의 세부 세출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6. 작 성 자 :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오진식 (☎8213)

※ 비용추계 상세 내역

(단위 : 천원)

직급	인원증감 (a)	1인당 평균 연간 인건비(b)	연간 인건비 증감액(c=a×b)	'26년 인건비 (d=c/12월x2)	비고
6급	2	88,750	177,500	29,584	- '26년 인건비 예산편성 직급별 평균 호봉 기준 산정 (기본급, 각종수당, 상여금 등 포함) - '26년 인건비는 실제 총원 가능 시점부터 산정(2개월분)
7급	4	71,049	284,196	47,366	
8급	10	55,145	551,450	91,909	
9급	6	47,526	285,156	47,526	
계	+22	-	1,298,302	216,385	전액구비

※ 직급별 인원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, 변동에 따라 추계예산이 증감될 수 있음